

# 「학회장」 및 「부학회장」 선출에 따른 관련 규정



## 규정명 : 학생간부 선거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36조에 따라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·대의원회 의장·대의원회 부의장·각 학부(과) 학회장·부학회장(이하 “학생간부”라고 한다.)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선거권)** 학생간부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있다.(개정 2012. 2. 1, 2012. 10. 11, 2016. 8. 1)

1. 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선거의 경우 : 주간 및 2부 재학생(산업체위탁교육 및 전공 심화과정 재학생을 2부 재학생이라 한다)(개정 2012. 10. 11)
2. 주간 부학생회장 및 주간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의 경우 : 주간 재학생
3. 2부 부학생회장 및 2부 대의원회 부의장 선거의 경우 : 2부 재학생
4. 학회장 및 부학회장 선거의 경우 : 해당 학부 또는 학과 재학생

**제3조(피선거권)** ① 학생간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(개정 2011. 3. 1)

1.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(개정 2012.10.11)
2.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3.0(B0) 이상을 취득한자로 학적부 기재상의 유급 및 경고, 성적 포기, 제적(미등록제적포함)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.  
(개정 2012.10.11, 2013.8.1, 2015. 9.10)
3.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4.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·통솔 능력이 있으며,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[실효된 형의 포함](개정 2012. 10. 11, 2013. 8. 1)
5. 선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자. 다만, 야간과정의 학생간부 후보자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.
6.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, 대의원회 부의장은 각각 선거권이 있는 5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단, 2부 부학생회장 및 대의원 부의장은 제외한다.(신설 2013. 8. 1)  
(개정 2016. 8. 1)

7.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 입후보자에 한하여 자격여부을 판단 한 후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(신설 2013. 8. 1)

② 학생간부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해당학과 1학년2학기~3학년2학기에 재학중인 자. 단,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,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회 부의장은 졸업 직전년도 학년의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만 입후보 할 수 있다.(개정 2016. 8. 1)

③ 학생간부를 역임한 자는 그 직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음 임기의 학생간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.(개정 2011. 3. 1)

④ 학회장·부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는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11. 3. 1)

제6조(선출시기) 학생간부의 선출 시기는 매 학년도 11월에 선출한다. 단, 11월중에 실시가 불 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내에 실시한다.(개정 2011. 3. 1)